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06
----------	------

제출년월일 : 2016년 4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복지정보 제공 및 연계,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 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2항에 의거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정사항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무임.
- 다. 발달장애인은 인지력 의사소통, 자기통제 능력 부족으로 평생 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로, 발달장애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16.7.1.~'17.12.31(보건복지부 권고)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11월) 시행에 따라 국비 및 시비로 운영되는 최초 시설로, 전국 지자체의 운영 성과분석을 위하여 동일한 위탁기간을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요청함

○ 위탁사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2항)

-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복지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유기발생 시 현장조사·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요예산(안) : 470백만원(2016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2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위임·위탁)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필 요 성

-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의사소통·자기통제 능력 부족으로 평생 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로, 발달장애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2항

-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민간위탁금(47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김희영(☎ 2133-7443)